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85
----------	-----

발의연월일 : 2010. 1. 18.

발 의 자 : 문희출·성용기 의원
(찬성자 7인)

□ 제안이유

- 가.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공공기관, 해당 공무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 나.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인천지역 건설산업 육성과 고용기회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참여비율 49퍼센트 이상을 추가함.
(안 제8조제2항제2호)
-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다.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예우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3)
- 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위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배제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4)

□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및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
2.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자 및 지역업자,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3(예우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의 우선·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우선적 보증

2.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단,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한다)
 3. 선정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과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4(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2. (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padding-left: 20px;"><신설></p>	<p>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삭제></p> <p>제8조의2(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u>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및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u></p> <p>2. <u>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u></p> <p>3. <u>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자</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및 지역업자,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p> <p>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의3(예우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의 우선·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우선적 보증 2.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단,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한다.) 3. 선정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p>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인증서 수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③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과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8조의4(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input type="checkbox"/> 타 시도 관련 조례(공동수급체 참여권장 및 포상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 부산광역시 및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대상 등) ○ 제5조(예우 및 지원)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조(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권장) -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 -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 제6조(적용배제) <input type="checkbox"/> 포상 관련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용위탁)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1조(우선적 보증)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8조(우선적 보증) -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관련자료	『세무조사 유예』 관련 보도 자료

《 관계법령 발취사항 》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8조(지역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 극대화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2.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하여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

③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건설업자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타 시도 관련 조례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및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대상 등)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09. 4. 1>

1. 시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인대상, 벤처기업인상, 수출대상 및 사회공헌장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08. 12. 31>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3.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예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나 기업인<개정 2009. 4. 1>

②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 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5. 시 주요행사 초청,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6.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①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4. 1>

-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게 된 경우<개정 2009. 4. 1>
 - 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개정 2009. 4. 1>
 - 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 5.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신설 2009. 4. 1>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려면 미리 해당 우수기업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9. 4. 1>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5조(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건설산업체와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과 포상의 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자
 -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업자
 - 3.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건설산업체
 - 4. 경기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건설업자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경기건설산업체와 건설인 선정을 위하여 도내 건설관련 협회의 추천을 받아 심사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권장할 수 있다.
 -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
- 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 제6조(자랑스런 건설인)**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체를 제7조에 의한 전라남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 2.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산업체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은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으로 본다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전라남도에서 수여하는 전라남도중소기업대상·수출상·산업 평화상을 받은 우수기업인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이상 수상한 우수기업인
3.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도지사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4.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5. 도 주요행사 초청,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2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6조(적용배제) 도지사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도지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에 다양한 참여기회를 제공한 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3. 기타, 납세자의 성실의무 이행 등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건설산업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항목, 세부사항, 평가방법, 배정범위, 납세자의 성실의무 이행 등 평가세부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도지사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중소기업 운전·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2.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3.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4. 도 주요행사 초청, 도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②제1항 제2호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예대상 및 유예범위 등을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8조 (적용배제) 도지사는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포상 관련 조례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7조 (사업)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중소기업청장, 시장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제10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관리·운동위탁)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 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관리·운동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용 보증 우선적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인천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관련)

제1조 (목적) 이 법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5.21]

제21조 (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1. 소기업
2. 소상공인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제18조 (우선적 보증)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5.8.31, 2007.6.28>

1. 「재해구호법」 제3조에 따른 구호의 대상이 되는 재해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제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1. 취득가액 10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2.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에 의하여 시상받은 우수 중소기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또는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보도자료(세무조사 유예관련)》

-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대폭 확대(국세청 2007. 1. 5 보도)

1.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임.
 -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그리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및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지난해의 고용증가 10%이상(최소 10명)에서 금년도에는 5%이상(최소 1명)으로 조사유예 기준을 대폭 완화해 영세한 유망 중소기업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아울러 조세시효가 임박하여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로 실시하여 세무조사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임.
 - * 간편조사 : 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절반 수준),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 위주의 간편한 조사

2. 지원대상

-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으로 다음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 물류산업 등 제조업 연관 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붙임1】에 해당하는 생산적이고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중소서비스업
 - 제조업, 광업, 농·축·수산·임업
 - * 주업 판정기준 : 지원대상 업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2007년도에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도 상시근로자수의 5% 이상 증가한 경우로서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 (예시) 2006년 20명 고용한 중소기업이 2007년에 1명만이라도 신규로 상시고용하면 해당
- 2007년 1.1 ~ 12.31 기간 중에 창업한 중소기업

수출 중소기업

- 2005사업연도 기준 연간 수출액(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액 포함)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중소기업

-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민간 협력체제로 추진 중인 '지능형 로봇 사업단'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추진사업단 참여업체로 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3. 지원내용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 수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은 1년간(2007.12.31까지) 유예
- * 2007년말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연장여부 검토
-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은 2년간(2008.12.31까지) 유예
- 지방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3년간(2009.12.31까지) 유예
- 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지방 창업중소기업은 5년) 유예
- 2007.1.5 현재 조사가 착수되어 진행중인 기업은 증거서류의 제출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기간 연장 없이 조사를 조기에 종결
- 2007.1.5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아직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을 물어 그 의사에 따라 조사 연기승인 등 조치

지원대상기업의 경영 애로시 납기연장 등 자금편의 제공

- 지원대상기업 중 자금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관련 규정에 따라 납기연장, 징수유예, 국세환급금 조기환급 등 최대한 지원

4. 기대효과

- 이번 생산적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 국민경제에 기여도가 큰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들의 신규고용을 앞당겨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5. 기타 참고사항

- 지원대상 기업인 경우에도 다음 사유로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시
 -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 조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가급적 간편조사 실시)
- 정상적인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유예하되 이로 인한 조사여력을 고소득 자영업, 투기성 부동산소득, 구조적 유통질서 문란 업종 등
 - 대표적인 세부담 불균형 세원과 세법질서 문란행위에 집중투입하여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은 더욱 제고해 나갈 것임.
 - 특히, 장부 은닉·파기,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지능적 조세포탈의 경우는 조세범으로 엄정 처벌하는 등 2007년 세무조사를 ‘양보다 질적인 측면에 역점’을 두어 실시할 방침임.

【道, 신설,우수기업 세무조사 3년간 면제】

- 올해 135개 기업 대상
- 사치성 재산 및 일부 유동자산 등은 면제조치 제외
- 조사대상 법인 축소 등 기업 친화적 시책 추진

Ann> 충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신설 기업과 우수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습니다. 정혜진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Re> 충남도가 올해부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한 곳은 지난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44개 기업 등, 모두 135개 법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무행정 측면에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신설기업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시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는 2007년도에 90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한 이후, 지난해 125개, 올해 135개 등 모두 350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면제 조치했으며 내년에도 약 150개 법인에 대해 면제할 계획입니다.

[출처] [道, 신설,우수기업 세무조사 3년간 면제 \(2월 26일 뉴스\)](#) | 작성자 [충남넷](#)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작성일자:2007-01-04 16:54:22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확대

국세청이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등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4일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실천의 일환으로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이 세금문 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세원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유예대상과 내용

첫째 서비스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환율하락, 내수부진, 유가상승 등으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제조업 등이 대상이며 유예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이다.

※ 2007년말에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을 감안해 유예기간 연장 검토할 계획

둘째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으로 생산라인 증설, 사업확대 등으로 상시근로자(연평균)가 2006년 전년에 비해 5%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으로서 올해 최소한 1명이상 신규로 고용했거나 고용계획이 있는 경우 2008년 12월말까지 2년간 세무조사 유예를 받으며 지방 중소기업과 창업중소기업(지방 창업중소기업 5년)은 2009년 12월말까지 3년간 유예를 받는다.